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증치세 세율 조정에 관한 통지**재세[2018]32호각 성, 자치구, 직할시, 계획단열시 재정청(국), 국가세무국, 지방세무국, 신강생산건설병단 재정국: 증치세 제도 개선을 위해, 증치세 세율 조정 유관정책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. 1. 납세자가 증치세 과세판매행위 발생 또는 수입화물을 수입하여 기존에 17%와 11% 세율을 적용한 경우, 세율을 각각 16%와 10%로 조정한다. 2. 납세자가 농산품을 구입하고 기존에 11% 공제율을 적용한 경우, 공제율은 10%로 조정한다. 3. 납세자가 생산판매 또는 위탁가공용으로 16%세율 화물의 농산품을 구입한 경우, 12%의 공제율에 따라 매입세액을 계산한다. 4. 기존 17%세율을 적용하고 수출퇴세(환급)율이 17%인 수출화물은 수출퇴세(환급)율을 16%으로 조정한다. 기존 11%세율을 적용하고 수출퇴세(환급)율이 11%인 수출화물 및 국경간 과세행위는 수출퇴세(환급)율을 10%으로 조정한다. 5. 대외무역기업은 2018년 7월 31일 전 수출한 제4조에 관련된 화물 및 판매한 제4조에 관련된 국경간 과세행위는 구입시 이미 조정전 세율에 따라 증치세를 징수한 경우 조정전의 수출퇴세(환급)율로 집행한다. 구입시 조정후 세율에 따라 증치세를 징수한 경우 조정후의 수출퇴세(환급)율을 집행한다. 생산기업이 2018년 7월 31일 전 수출한 제4조에 관련된 화물 및 판매한 제4조에 관련된 국경간 과세행위는 조정전의 수출퇴세(환급)율로 집행한다. 수출화물 퇴세(환급)율의 집행시기 및 수출화물의 시간은 수출화물 세관신고서 상 명기된 수출일자를 기준으로 조정하고, 국경간 과세행위 퇴세(환급)율의 집행시기 및 국경간 과세행위 판매 시간은 수출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를 기준으로 조정한다. 6. 본 통지는 2018년 5월 1일부터 집행한다. 이전의 유관 규정과 본 통지 규정의 증치세 세율, 공제율 및 수출퇴세(환급)율이 불일치할 경우, 본 통지를 기준으로 한다. 7. 각 지역은 증치세 세율 조정업무를 더욱 중시하여야 하며, 실시전의 각 항목의 준비 및 실시과정 중의 모니터링 분석 및 홍보설명 등 업무를 잘 처리하고, 증치세 세율 조정업무를 안정적이고 단계별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확실히 보장한다.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, 즉시 재정부와 세무총국에 보고한다. 재정부세무총국2018년 4월 4일 |  | **关于调整增值税税率的通知**财税〔2018〕32号各省、自治区、直辖市、计划单列市财政厅（局）、国家税务局、地方税务局，新疆生产建设兵团财政局：　　为完善增值税制度，现将调整增值税税率有关政策通知如下：　　一、纳税人发生增值税应税销售行为或者进口货物，原适用17%和11%税率的，税率分别调整为16%、10%。　　二、纳税人购进农产品，原适用11%扣除率的，扣除率调整为10%。　　三、纳税人购进用于生产销售或委托加工16%税率货物的农产品，按照12%的扣除率计算进项税额。　　四、原适用17%税率且出口退税率为17%的出口货物，出口退税率调整至16%。原适用11%税率且出口退税率为11%的出口货物、跨境应税行为，出口退税率调整至10%。　　五、外贸企业2018年7月31日前出口的第四条所涉货物、销售的第四条所涉跨境应税行为，购进时已按调整前税率征收增值税的，执行调整前的出口退税率；购进时已按调整后税率征收增值税的，执行调整后的出口退税率。生产企业2018年7月31日前出口的第四条所涉货物、销售的第四条所涉跨境应税行为，执行调整前的出口退税率。　　调整出口货物退税率的执行时间及出口货物的时间，以出口货物报关单上注明的出口日期为准，调整跨境应税行为退税率的执行时间及销售跨境应税行为的时间，以出口发票的开具日期为准。　　六、本通知自2018年5月1日起执行。此前有关规定与本通知规定的增值税税率、扣除率、出口退税率不一致的，以本通知为准。　　七、各地要高度重视增值税税率调整工作，做好实施前的各项准备以及实施过程中的监测分析、宣传解释等工作，确保增值税税率调整工作平稳、有序推进。如遇问题，请及时上报财政部和税务总局。财政部 税务总局　　2018年4月4日　　　 　　 |